인천지방법원

판 결

사건 2023고단6205 횡령

피고인 A

검사 서원준(기소), 조현희(공판)

변호인 변호사 황용해(국선)

판결선고 2023. 11. 10.

주 문

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.

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이 유

범죄사실

피고인은 망(亡) B의 지인이고, 피해자 C는 위 B의 부인으로, 피고인은 위 B이 매입한 인천 강화군 D 일대의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

피고인은 2019. 1. 23.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B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비 명목의 돈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(계좌번호 1 생략)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약속한 자재비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던 별건공사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9. 6. 27.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9,950,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- 1. 피고인의 법정진술
- 1.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
- 1. C 작성의 고소장
- 1. 고소인 제출자료, E계좌 거래내역

법령의 적용

- 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- 각 형법 제355조 제1항(횡령의 점). 각 징역형 선택
- 1. 경합범가중

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

1. 집행유예

형법 제62조 제1항

양형의 이유

- 1.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: 징역 1개월~7년 6개월
- 2.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

[유형의 결정] 횡령·배임범죄 > 01. 횡령·배임 > [제1유형] 1억 원 미만

[특별양형인자] 감경요소: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(공탁 포함)

[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] 감경영역, 징역 1개월~10개월

3. 선고형의 결정: 징역 4월 / 집행유예 1년

2005년 횡령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, 성행, 환경, 범행의 동기, 수단과 결과,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홍준서

별 지

범 죄 일 람 표

연번	일자	입금 계좌	금액(원)	보관 경위 및 범행 방법
1	2019. 1. 23.		8,000,000	고소인의 남편으로부터 자재를 구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보 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
2	2019. 2. 1.		1,000,000	고소인의 남편으로부터 공사비를 공사업체에 전
3	2019. 2. 13. 2019. 3. 28.	피고인 명의	1,000,000	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소인으로부터 돈을
5	2019. 4. 29.	E은행 계좌	500,000원	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
		(계좌번호 1		고소인의 남편으로부터 자갈을 대신 구입해달라
6	2019. 5. 20.	생략)	1,950,000	는 부탁을 받고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
				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
7	2019. 6. 4.		500,000	고소인의 남편으로부터 공사비를 공사업체에 전
8	2019. 6. 14.		4,000,000] - 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소인으로부터 돈을
9	2019. 6. 27.		2,000,000	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
합계				19,950,000